

정 관

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6., 2016.8.31>

제2조 (명칭) 이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이라 칭한다. <개정 2016.8.31>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8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시가 출자한다. <개정 2015.3.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관한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광고방법) ①공사가 공고할 사항은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②공사의 고시 사항은 시보에 게재한다.

제2장 사업

제6조 (사업의 범위)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 2.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 3.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개정 2015.3.16.>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신설 2015.3.16.>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신설 2015.3.16.>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 <신설 2015.3.16.>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신설 2015.3.16.>
 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신설 2015.3.16.>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신설 2015.3.16.>
 - 11.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개정 2015.3.16.>
 - 1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개정 2015.3.16.>
 - 13.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 건설사업 <개정 2015.3.16.>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 사업 <개정 2015.3.16.>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5.3.16.>
 - 16.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개정 2015.3.16.>
- ②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획서) 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사업의 집행)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2.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대행사업) ①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31>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 (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4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10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6.12.21.>

②비상임이사는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과 공기업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 도시계획·주택건설분야 등 외부전문가, 근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개정 2016.12.21.>

③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2항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다.

④비상임이사 가운데 2명은 공사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법령, 조례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12.21.>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 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법령, 조례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②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영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3.16.>

③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2조 (임원추천위원회) ①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위원회는 추천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그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사에서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사규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 하며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으로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개정 2016.12.21.>

2. 미성년자 <개정 2016.12.21.>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6.12.21.>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12.21.>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12.21.>

6. <삭제 2016.12.21>

7.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8. 근로자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6.12.21.>

②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6.12.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 (직원의 임면) ①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총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사규로 정한다.

제16조 (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7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 (임직원의 보수) ①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그 밖에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

②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

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1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장 조직 및 정원

제22조 (조직 및 정원) ①공사에 사장, 감사, 6본부를 두며, 기구표는 별표1과 같다.
〈개정2012.10.15, 2014.4.2., 2014.12.10., 2015.12.30〉

②공사의 임원 및 직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단, 임대주택관리 등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하여 별표2의 정원과 별도로 정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2012.10.15, 2013.11.8, 2014.4.2., 2014.12.10., 2015.12.30., 2017.01.20〉

③공사는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별표2의 정원내에서 한시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0〉

④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⑤공사는 서울특별시와 공사간 업무위탁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위탁협약기간중 별표2 정원표외에 공사의 임원에 준하는 사업단장을 둔다. 〈개정2015.12.30〉

제5장 이사회

제23조 (설치 및 구성)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공사의 사업계획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조직, 기구 및 정원(정원외인력정수 책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1.20.>
- 5.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 6.사채의 발행, 상환에 관한 사항
- 7.자금의 장, 단기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 8.자금의 일시차입한도액 및 차입한도 증액 변경에 관한 사항
- 9.외국차관의 도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 10.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 11.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재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
- 12.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 13.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 14.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 15.생산재화 및 용역의 판매가격
- 16.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7.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18.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
- 19.신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 20.그 밖에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이사회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 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 (이사회 의장) ①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16.>

②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7조 (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

③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이사회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간이한 사항은 문서로써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재무회계

제30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1조 (예산과 결산) 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 지체없이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

으로 정한다.

제33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의 결산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신설 2015.3.16.>
4. 이익배당(시 일반회계에 납입) <개정 2015.3.16.>
5.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개정 2015.3.16.>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제1항제5호의 적립금으로 보전 <개정 2015.3.16.>
2.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에서 보전 <개정 2015.3.16.>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이익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며,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3.16.>

제34조 (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사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공사의 사규에 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7장 사채발행 <개정 2015.3.16.>

제35조 (사채발행) ①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16.>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증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제36조 (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37조 (자금차입)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으로 정한 차입한도 범위내에서 당해연도에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 (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최초의 사업년도)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최초 임원의 임기) 공사의 최초 임원의 임기는 공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④(공무원의 파견조치등)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시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는 공사직원의 해당직급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은 공사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한다.
- ⑥(작성 및 서명) 공사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의 설립준비위원 전원 이 서명날인한다.

1988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준비위원

주소	성명	건설 관리 국 장	인
주소	성명	투자 관리 담 당 관	인
주소	성명	인 사 과 장	인
주소	성명	주택 기획 과 장	인
주소	성명	도시 개발 과 장	인
주소	성명	주택 건설 확대 추진 반 장	인

부칙 (1989.12.1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9.21)

이 정관은 변경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1992.8.1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5.2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1994.6.2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8.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5.1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2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17)

이 정관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3.1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6.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9.1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6.2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3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제35조의2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도 199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98명을 초과하지 못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94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관리사무소 외부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사무소에서 직영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외부위탁하며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 운영방법을 결정하며 외부위탁 결정시 임대사업자로서의 고유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사무소당 2명이내의 정원을 둘 수 있다.

부칙 (1999.7.2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2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1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관리사무소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부터 이 정관 시행일 이전까지 관리사무소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한시조직 및 정원) DMC사업 추진을 위해 1처 3팀의 조직과 총11명(1급 1명-처장요원, 2급 3명-팀장요원, 3급 3명, 4급 4명)의 정원을 DMC단지 초기 입주가 개시되는 2005년 7월 1일까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며, 이후 사업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존폐 또는 업무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2002.3.2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2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 기구표중 공사3 처 및 뉴타운사업2팀은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업무량 증가에 따른 한시정원 운영) 제35조의2 제4항 관련 별표2의 임·직원 정원 외 82명을 한시정원으로 두되, 30명은 2007년12월31일까지, 52명은 2008년12월31일까지 운영하고 기한이 도래하기전에 업무량 추이를 검토하여 기한연장 등 정원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부 칙 (2004.3.1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사규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공사 사규에서 사용중인 사명은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3.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관련된 기구표 중 건축공사2팀, 기전공사2팀, 뉴타운사업2팀, 뉴타운건축팀, 뉴타운기전팀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운영) 뉴타운사업본부장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업무량 추이를 검토하여 기간연장 등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부 칙 (2004.8.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제35조의2제4항 관련 별표2의 임직원 정원외에 뉴타운보상분야 6명을 한시정원으로 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업무량 추

이를 검토하여 기간연장 등 정원운영방법을 결정한다.

부칙 (2004.11.1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7)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조직 및 정원) DMC사업 추진을 위해 1처3팀의 조직과 총 11명(1급 1명, 2급 3명, 3급 3명, 4급 4명)의 정원을 2005년 12월31일까지 별도 있는 것으로 보며, 이후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존폐 또는 업무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2005.8.2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15)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조직 및 정원) DMC사업 추진을 위한 1처 3팀의 조직은 사업3본부에 통합하고 총 11명(1급 1명, 2급 3명, 3급 3명, 4급 4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업무량 추이를 검토하여 기한연장 등 정원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부칙 (2006.1.3)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조직 및 정원) DMC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은 사업3본부에 통합하고 총11명(1급 1명, 2급 3명, 3급 3명, 4급 4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업무량 추이를 검토하여 기한연장 등 정원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부칙 (2007.2.2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항은 2008년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업무량 증가에 따른 한시정원 운영) 제35조의2 제4항 관련 별표2의 임·직원 정원 외 82명을 한시정원으로 두되 2008년12월31일까지 운영하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업무량 추이를 검토하여 기한 연장 등 정원운영방법을 결정한다.

부칙 (2008.7.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8)

①(시행일)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조직 및 정원)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칙에 의한 한시 정원 100명 범위내에서 별표1의 기구 및 별표2의 임·직원 정원외에 1단 3팀의 조직과 20명(1급 1명, 2급 3명, 3급~6급16명)의 정원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있는 것으로 보며,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기한연장 등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부칙 (2009.1.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업무량 증가에 따른 한시정원 운영) 제35조의2 제4항 관련 별표2의 임·직원 정원 외에 한시정원 45명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업무량 추이를 검토하여 기한연장 등 정원운영방법을 결정한다.

③(한시조직 및 정원)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표1의 기구 및 별표2의 임·직원 정원외에 1단 3팀의 조직과 20명(1급 1명, 2급 3명, 3급~6급16명)의 정원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있는 것으로 보며,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기한연장 등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④(한시조직 및 정원) 마곡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표1의 기구 및 별표2의 임

· 직원 정원외에 1단 5팀의 조직과 22명(1급 1명, 2급 5명, 3급~6급16명)의 정원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있는 것으로 보며,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기한연장 등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부칙 (2009.6.18)

이 정관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1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3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36조 제4항관련 별표2는 2011년 2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7)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한시정원은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한시조직 및 정원) 가든파이브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표1의 기구 및 별표2의 임·직원 정원외에 1단 4팀의 조직과 29명의 정원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있는 것으로 보며,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기한연장 등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한시조직 및 정원) 마곡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표1의 기구 및 별표2의 임·직원 정원외에 1단 5팀의 조직과 38명의 정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있는 것으로 보며,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기한연장 등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부 칙(2011. 4. 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15)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조직 및 정원) 마곡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표1의 기구 및 별표2의 임·직원 정원외에 1처 7팀(1팀은 별도 배치)의 조직과 46명의 정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있는 것으로 보며,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기한연장 등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부 칙(2013. 11. 8)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사무직) 기존 관리사무직의 직급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3~6급 통합정원으로 운영한다.

부 칙(2013. 12. 3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조직 및 정원) 가든파이브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표1의 기구 및 별표2의 임·직원 정원외에 1처 4팀의 조직과 29명의 정원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있는 것으로 보며,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기한연장 등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부 칙(2014. 4. 2)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 건설경영전문가 채용시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③(3급~6급 외) 전문위원은 1956년생에 적용한다.

부 칙(2014. 12. 1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조직 및 정원) 마곡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표1의 기구 및 별표2의 임·직원 정원외에 1처 7팀(1팀은 별도 배치)의 조직과 41명의 정원을 2015년 12월 31

일까지 별도 있는 것으로 보며,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기한 연장 등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개정2015.12.30>

③(한시조직 및 정원) 가든파이브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표1의 기구 및 별표2의 임·직원 정원외에 1처 4팀의 조직과 23명의 정원을 2015년 12월 31까지 별도 있는 것으로 보며,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기한 연장 등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부 칙(2015. 3.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항의 전문위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6급외) 전문위원은 1956년 및 1957년생에 적용한다.

부 칙(2015.12.3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이 정관 개정으로 공사 사규에서 사용 중인 사명은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2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제22조 제1항·제2항관련)> <개정 2014.12.10., 2015.12.30>

기 구 표

(사장, 감사, 6본부)

사 장	
	감 사

기 획 경 영 본 부		주 거 복 지 본 부		도 시 재 생 본 부		공 공 개 발 사 업 본 부		택 지 사 업 본 부		건 설 안 전 사 업 본 부	
----------------------------	--	----------------------------	--	----------------------------	--	--------------------------------------	--	----------------------------	--	--------------------------------------	--

<별표 2(제22조제4항 관련)> <개정2012.10.15, 2013.11.8, 2014.4.2., 2014.12.10., 2015.12.30>

정원표

총정원	임원	직원					
		계	일반직				전문직
			소계	1급	2급	3급 이하	
781	5	776	721	19	66	636	55